

제34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.
개정판 교재가 나오기까지 참고해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임원훈련교재 「하나님이 쓰시는 사람」, 2015년 1월 7일(초판 2쇄)

< p. 18 >

(2) 집사의 직무

③ 개체교회의 선교부, 교육부, 사회봉사부, **예배부**, 문화부, 재무부, 관리부, 기타 부서에 소속하여 맡은 바 직무에 봉사한다.

< p. 19 >

(4) 집사의 사명

① 역량에 따라 선교부, 교육부, 사회봉사부, **예배부**, 문화부, 재무부, 관리부, 기타 부서의 임무를 분담한다.

< p. 20 >

2) 권사의 직무와 역할

권사는 입교인 10명에 1명의 비율로 선택하되 입교인 수가 10명 이하인 교회라도 1명의 권사를 선출할 수 있다.

< p. 22~23 >

(1) 장로의 자격

① 감리회에서 권사로 5년 이상 연임하면서 신앙이 돈독하고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며,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며, 전도할 능력과 열심에 있는 자로 40세 이상이 되고 65세 미만인 이

② 기획위원회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천거를 받아 당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신천장로로 결의된 이 <개정>

③ 개체교회에서 신천장로로 추천 받아 신천장로 고시과정에 합격하고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 통과를 받고 장로증서를 받은 이

④ 타교파에서 이명해 온 장로는 기획위원회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받아 이명장로 고시과정에 합격하고 지방회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품행 통과를 받고 장로증서를 받은 이 <신설>

< p. 24 >

담임자는 교회 행정의 책임자(제38조 2항) → 담임자는 교회 행정의 책임자

< p. 29 >

(4) 장로의 사명

⑤ 담임자의 부재나 유고 시에 담임자 또는 감리사가 부담임자나 장로에게 위임한 범위 내에서 담임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< p. 34~35 >

1) 당회의 역할

정기당회는 일 년에 한 번 모이나 임시당회는 담임자가 필요할 때와 당회 회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한다. <개정>

●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당회 재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. 다만, 장로의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를 받아 지방회에서 절차를 밟아 처리한다. <개정>

< p. 40 예배부 추가 >

4) 예배부

(1) 직무

①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모든 예배와 성례가 은혜롭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돕는다.

② 담임자의 지도에 따라 예배 안내 및 헌금과 강단위원을 조직하여 훈련하고 세운다.

③ 모든 예배의 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하여 보관한다.

(2) 사역 유형

구 분	내 용
① 새신자 사역	새신자 안내, 새신자 카드 작성, 담임자와의 면담 안내 등
② 예배 안내	교인 환영, 주보 배부, 예배 자리 안내 등
③ 예배 준비	임사자 안내, 헌금위원·강단위원 조직, 성례전 준비 등
④ 일지 기록	예배 일지 기록 및 보관 등

4) 재무부 5) 관리부 6) 문화부 → 5) 재무부 6) 관리부 7) 문화부

< p. 47 >

1) 남선교회

남선교회 회원은 본 교회에 소속된 만 46세 이상 만 70세까지의 남성 성도로 한다. 단, 만 70세 이상의 회원은 특별회원으로 한다. → 남선교회 회원은 본 교회에 소속된 만 48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.

< p. 48 >

3) 청장년선교회

교회 내 만 30~45세 이하의 남자들로 조직하며, → 교회 내 만 35~47세 이하의 남자들로 조직하며,